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이버공격·위협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

-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없이 통지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04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개 요

1.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5. 30.
3. 회부연월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국가정보원장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받도록 정하는 등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산망이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법원행정처에서 해킹 사실을 즉시 국가정보원에 알려 수사를 시작했다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보안 대책 수립 등의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의 대응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이버공격·위협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관련 조문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1. (생략) 2. “<u>행정기관</u>”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15. (생략)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① <u>행정기관의 장</u>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u>정보시스템</u>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에 따른</u>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제56조의2(사이버공격·위협 발생 시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u>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u> 제56조의3(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현행 제56조의2와 같음)

현행	개정안
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56조의3</u>(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재난 또는 사이버 공격 등으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라 통합·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u>제56조의4</u>(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현행 제56조의3과 같음) ※관련 조문 「전자정부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 등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 3월 4일 법원에서는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음. 동 사과문에서 법원은 “2023년 2월 사법부 전산망에 대한 외부의 침해 시도가 확인되어 자체적인 사안의 조사와 함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조치를 취하였으나, 오랜 조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2023년 12월 18일부터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함께 심층조사를 진행하였음”을 밝히고, 국민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친 데 대하여 사과하였음¹⁾.

1) “사법부 전산망 침해사고에 대하여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2024.3.4.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참고

사법부 전산망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의 합동 조사 및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경찰청은 2024년 5월 13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1.7. 이전부터 2023.2.9.까지 있었고, 이 기간에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되었으며, 그 중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를 법원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하여 유출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음”과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서버 결제내역(가상자산), 아이피 주소 등을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본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하였다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²⁾.

현행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56조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헌법기관”이라 함) 및 행정부로 하여금 각각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제2항).

또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유통 시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3항),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2) “북,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1,014GB 절취 - 개인회생에 관한 문서 파일 5,171개(4.7GB) 유출 확인”, 2024.5.13. 경찰청 보도자료 참고

하는 경우에만 제3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제4항)³⁾⁴⁾.

개정안은 헌법기관과 행정부가 각각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사범부 전산망 침해사고와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또는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하여 헌법기관을 포함⁵⁾한 범국가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려는

- 3)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3항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4)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3.~5. (생략)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 8.~9. (생략)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11.~15. (생략)
- 5) 「전자정부법」의 정의 규정(제2조제2호)에 따라, 행정기관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전자정부법」은 각 헌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도록 규정⁶⁾하고 있고, 다른 법률들도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취지로 헌법기관을 행정부의 권한 행사 범위에서 제외⁷⁾하거나 헌법기관에서 자체적인 지침을 정하여 시행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포함됨.

6)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5.~15. (생략)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①~⑤ (생략)

⑥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①~④ (생략)

⑤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①·② (생략)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전자적 업무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도 총괄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⑤ (생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8)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사이버안보라는 전문 분야의 특수성과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헌법기관들의 의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회사무처는 국회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헌법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를 위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다수의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하는 경우 헌법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의 포괄적인 관리와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권력분립의 원칙과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의 예방 및 대응 업무가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직무 수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임⁹⁾¹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9)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는 정치권 및 폭넓은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사이버 공격·위협 발생 시 타 기관으로의 피해확산 방지 등을 위해 헌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 간 정보공유체계가 필요하고,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¹¹⁾도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국가

관한 정보

-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 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 ②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적용 기관에 헌법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672호,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정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11)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 (생략)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4.~15. (생략)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개정안의 적용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개정안의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가 제출되
었음.

문 의 처
02)6788-5339